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투융자심사위원회,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투·융자심사위원회,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·운영(안 제1조).
- 나.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재정투·융자심사,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재정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,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2조).
- 다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추가(안 제6조제3항).
- 라. 현행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에서 규정한 공시내용, 시기, 매체 등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(안 부칙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4. 25 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, 법 제37조, 법 제60조의 규정에서 정한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심의”를 “자문 또는 심의”로 하고, 동조제4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여 동호를 제7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4.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에 대한 사항
5. 법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6.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 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, 법 제37조, 법 제6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 <p>4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조 (기능) ----- -----자문 또는 심의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에 대한 사항</p> <p>5. 법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</p> <p>6.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</p> <p>7. ---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-----</p>
<p>제6조 (회의개최) ①~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제6조 (회의개최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